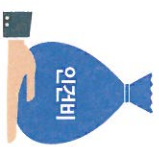


정규직전환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덜어 드립니다



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,

상시,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립되도록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전환대상: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, 인전·보건관리자

지원 대상 기업

(기간제·파견)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*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

(인전·보건관리자)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

제외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
-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부동산업, 일반유류 주점업, 갯벌링 및 베딩업 등 부정적 업종 일부 제한

지원금 신청, 이렇게 준비하세요

지원 대상 근로자



6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
다만,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·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

제외

-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
-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-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외국인 근로자 (단, 체류자격이 거주자-2, 영주자-5), 결혼이민자(자-6)인 경우는 지원 가능)

이것만은 지켜주세요!



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



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2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

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



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·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.

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드립니다



임금상승분의 70%(청년층은 80%)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하여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



임금상승분의 50%
임금상승분의 70%
(청년층은 80%)

예시 | 임금이 월평균 40만 원 인상되는 경우

